



EU,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 금지의 일괄적 면제 규정 폐지 예정

최 원 선임연구원

여약

■ EU 보험회사들에 대해 경쟁 제한 공동행위로부터의 일괄적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 제외 규정」의 효력이 2017년 3월 종료될 것으로 보임. 동 규정의 효력이 예정대로 만료되면, EU 보험회사들은 금지된 공동행위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행위가 개별적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야 하고, 이로 인한 EU 보험회사의 부담은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EU 보험회사들에 대해 경쟁 제한 공동행위로부터의 일괄적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 제외 규정」(IBER)¹⁾의 효력이 종료될 것으로 보임.

- EU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및 관행 등과 같은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음(EU조약 제 101조 1항²⁾).
- EU 보험회사가 금지된 공동행위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 면제 요건(EU조약 제 101조 3항³⁾)을 충족하거나 일괄적 면제가 가능한 특정 범주(규정상 명시)에 포함되어야 함.
 - 개별적 면제 요건에서는 공동행위가 기술진보를 통한 비용 효율성 또는 질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⁴⁾
 - 일괄적 면제가 가능한 특정 범주에는 통계집적, 통계표, 공동연구와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풀(co-(re)insurance pool)⁵⁾이 포함됨.
- 그러나 일괄적 면제 범주를 명시한 규정은 일몰규정으로, 향후 특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7년 3월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1) Commission Regulation No. 267/2010(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IBER)).
 2) Article 101(1)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3) Article 101(3)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4) 송윤아(2013), 「공동재보험의 단일요율과 요율투명성에 대한 공정경쟁 측면의 검토 필요」, 『KIRI weekly』, 제249호, 보험연구원 참조.
 5)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위험 또는 거액의 위험을 복수의 (재)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점유율이 공동보험풀의 경우 20% 이하, 공동재보험풀의 경우 25% 이하인 경우만 일괄 면제가 허용됨.

■ EU 집행위원회는 일괄적 면제 규정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개정 및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⁶⁾

- EU 집행위원회는 공정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 더 이상 일괄적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1991년 규정 제정 당시부터 향후 일괄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공동행위의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축소시켜 왔음.
- 해당 규정의 효력이 만료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동안 일괄적 면제가 가능했던 공동행위들이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임.⁷⁾
- 그러나 EU 보험회사들은 금지된 공동행위로부터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개별적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⁸⁾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 따라서 EU 보험회사들은 공동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해당 공동행위가 개별적 면제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일괄적 면제사유였던 통계집적, 통계표, 공동연구는 보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별적 면제 요건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U 보험회사들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재)보험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일괄 면제가 가능했던 공동(재)보험폴 운영 시 요율 및 계약 조건을 관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된 공동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⁹⁾ **kiri**

6) EC(2016. 3. 17),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Brussels, COM (2016) 153 final.

7) Lexology(2016. 8),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does the european commission's report signal the beginning of the end?".

8) EU조약 제101조 3항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음.

9) 송윤아(2013) 참조.